제323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문 화 복 지 위 원 회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6. 10. 30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 공 선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 제안경과

○ 본 동의안은 2026년 10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1일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

2. 제안이유

○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돌봄서비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사전 동의를 받는 사항임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및 제19조(재위탁 · 재계약)에 따라 시의회 동의안 제출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 내용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기본돌봄, 숙제지도, 문화 · 예술 · 스포츠 등 프로그램, 등 · 하원 지원 등

나. 위탁시설 개요

시설명	구분	위 치	면적(㎡)	정원	現 수탁기관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재위탁**	별내3로 247 (별사랑마을2-10단지)	197.29	32	별나라꿈길 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한동윤)

다. 민간위탁 기간

시설명	설치일	위탁기간	
		기존	재위탁 시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2022.03.01.	2022.03.01. ~ 2027.02.28.(5년)	2027.03.01. ~ 2032.02.29.(5년)

라.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심사표에 의한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사

성과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	→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	수탁자 선정심의 위원회 심의	→	위·수탁 협약체결
2026. 11월 중		2026. 12월 중		2027. 1월 중		2027. 2월 중

마.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위탁경비 : 약 155,762천원 (1개소/년)

산출근거		합계(천원)	비고
계		155,762	
인건비	·(기본급) 센터장 : 3,342천원 × 12개월 × 1인 ·(기본급) 돌봄교사(전일제) : 3,102천원 × 12개월 × 1인 ·(기본급) 돌봄교사(시간제) : 1,551천원 × 12개월 × 1인 ·(기본급) 돌봄인력(시간제) : 1,551천원 × 12개월 × 1인 ·(호봉제) 개인별 호봉 적용에 따른 기준인건비 초과분 ·(명절수당) 개인별 호봉에 따른 기본급 × 60% × 2회 ※ 월급여,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퇴직적립금 포함	약 127,452	기본인건비 + 추가인건비 (호봉적용) + 명절수당
운영비	·(1,530천원 × 12개월) + (400천원 × 2개월)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용비, 수수료, 여비 등	19,160	냉난방비 포함
돌봄 프로그램비	·200천원 × 12개월	2,400	
급식비	·4,500원 × 25명(정원의 80%) × 60일(방학일수) ※(지원기준) 중식 1식 단가 9,000원의 50% 보조	6,750	*방학일수(안) 겨울방학 : 40일 여름방학 : 20일

바.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구 분	검 토 의 견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돌봄종사자 채용, 돌봄 프로그램 구성, 학부모 관리 및 돌봄센터 시설 관리 등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 업무를 위탁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 ○ 돌봄의 질적 향상을 위해 초등아동돌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돌봄전문가에게 위탁 운영 필요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단발성이 아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운영 가능
경제적 효율성	○ 돌봄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으로 콘텐츠 활용 및 관리인력 측면에서 경제적 효율성 제고 ○ 외부강사 및 외부자원 활용을 통해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 구성으로 사교육비 절감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오랜기간 축적된 경험 및 전문성을 통해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원활한 돌봄프로그램 운영・관리 가능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정기평가 대상 시설 ○ 성과지표의 객관화 및 정당화로 자체평가 용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및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지도·감독)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점검을 통하여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 민간 위탁을 통해 변화하는 돌봄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프로그램 기획 및 활동의 유연성을 높여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종 합 의 견	○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는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지원 ○ 전문 자격을 갖춘 돌봄 종사자를 채용하여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돌봄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가 가능 ○ 지역사회 내 자원을 활용하고 온마을이 함께 돌보는 효율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민간위탁 운영으로 지속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사.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성과평가
- 근거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1조(성과평가)
- 대상 :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 아동권리보장원 평가 결과 점수 비공개로 11월 중 부서 자체평가 예정

○ 기대효과
-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공백 해소
- 지자체에서 직접 설치한 시설을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함으로써 공공성 강화 및 아동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

○ 향후계획
- 2026. 11. :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성과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
- 2026. 12. : 수탁법인 공개모집 및 서류 접수
- 2027. 1. :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 및 수탁기관 선정
- 2027. 2. :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인수인계 및 위·수탁협약 체결

4. 참고사항

가. 참고자료 : 붙임

나. 관련부서 : 여성아동과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위탁기간 만료가 예정된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의 운영사무를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이에 대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임.

○ 검토 결과,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는 관련 절차에 따라 이행된 것으

로 보이며 해당 사무는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무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의 성격상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활용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다만, 위탁기간이 5년으로 비교적 장기간인 점을 고려할 때,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정한 선정절차가 담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다함께돌봄센터 현황(2026.10.기준)

구분	설치일	운영방식	위탁기간(5년)	시설장	법인명(대표자)	소재지	정원
1호점	2019.11.01.	위탁	2024.11.01. ~ 2029.10.31.	현OO	교육공동체 우리누리 사회적협동조합(김OO)	진접읍 (LH17단지)	30명
2호점	2020.05.01.	위탁	2025.05.01. ~ 2030.04.30.	안OO	별나라꿈길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한OO)	화도읍 (라온3단지)	30명
3호점	2020.11.01.	위탁	2025.11.01. ~ 2028.04.30.	이OO	위스테이별내 사회적협동조합(김OO)	별내동 (위스테이)	20명
4호점	2020.11.01.	위탁	2025.11.01. ~ 2030.10.31.	김OO	별나라꿈길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한OO)	별내동 (별사랑2-9단지)	30명
5호점*	2021.11.01.	위탁	2021.11.01. ~ 2026.10.31.	김OO	교육공동체 우리누리 사회적협동조합(김OO)	별내동 (별가람1-8단지)	20명
6호점*	2021.12.01.	위탁	2021.12.01. ~ 2026.11.30.	김OO	별나라꿈길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한OO)	별내동 (별빛3-8단지)	20명
7호점	2022.03.01.	위탁	2022.03.01. ~ 2027.02.28.	이OO	별나라꿈길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한OO)	별내동 (LH2-10단지)	32명
8호점	2022.07.01.	위탁	2022.07.01. ~ 2027.06.30.	박OO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김OO)	다산동 (다산지금A5)	32명
9호점	2023.07.17.	위탁	2023.07.17. ~ 2028.07.16.	장OO	별나라꿈길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한OO)	다산동 (다산지금데시앙)	20명
10호점	2024.01.01.	위탁	2024.01.01. ~ 2028.12.31.	이OO	지식나눔터 사회적협동조합(안OO)	다산동 (다산포레스트2단지)	20명
11호점	2024.01.01.	위탁	2024.01.01. ~ 2028.12.31.	김OO	사회복지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한국장로교복지재단(이OO)	진접읍 (가나안교회)	20명
12호점	2024.06.20.	위탁	2024.06.20. ~ 2029.06.19.	민OO	교육공동체 우리누리 사회적협동조합(김OO)	다산동 (도농공원 문화체육시설)	25명
13호점	2024.06.20.	위탁	2024.06.20. ~ 2029.06.19.	강OO	별나라꿈길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한OO)	다산동 (다산역자연앤푸르지오)	20명
14호점	2025.07.01.	위탁	2025.07.01. ~ 2030.06.30.	유OO	교육공동체 우리누리 사회적협동조합(김OO)	다산동 (등성이숲센터)	25명
15호점	2025.12.03.	위탁	2025.11.03. ~ 2030.11.02.	이OO	지식나눔터 사회적협동조합(안OO)	화도읍 (라온4단지)	25명

*공개모집을 통해 5호점, 6호점 차기 수탁자 선정 완료 : 기존 법인 선정

붙임 관련 법령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남양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

제7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돌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에 우선 근거하고, 그 밖의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 (재위탁 · 재계약)<개정 2024.2.15.>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 재계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2.15., 2024.10.2.>

② 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24.2.15.><개정 2024.10.2.>

③ 시장은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이전과 동일한 수탁기관을 연속하여 선정하고자 할 경우, 제4항을 준용한다.<신설 2024.2.15.>

④ 시장은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위탁사업의 성과평가와 제17조의 지도·감독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2.15.>

⑤ 시장은 재위탁 · 재계약 내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24.2.15.>